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6. 21 선고 2022가단50271 판결 [소유권 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모병철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웰스 담당변호사 김기수

변론 종결2023. 5. 17.

판결 선고2023. 6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망 C과 망 D는 그 사이에 자녀로 아들 E, 피고와 딸 F, 원고, G를 두었다.

나. 망 C이 1996. 4. 30. 사망한 후,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. 5. 1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6. 10. 30. 망 D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1996. 10. 30. 망 D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.

다. 망 D는 2011. 9.경 H병원에서 기억력 저하 및 이상행동으로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하였고, 2012. 5. 18.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'상세불명의 치매'진단을 받았으며, 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. 2. 25.경 사망하였다.

라.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11. 11. 증여를 원인으로 2016. 11. 14.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한편, E와 G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단32312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망 D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E와 G의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0. 11. 25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 당시 망 D가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피고가 E, G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(대구지방법원 2020나325562), 항소심에서 E는 소를 취하하였고, G는 피고로부터 119,415,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호증(가지번호를 포함한다), 갑 제6호증의5 및 을 제1호증, 을 제4호증의 1, 3, 을 제9호증의2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, 이 사건에서 피고도 이를 다투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,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망 D의 사망에 따라 그 자녀들이 각 1/5 지분씩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/5 지분에 관하여

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망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겠다고 유언하였고, 망 C 사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갖는 것을 전제로 망 D가 그 등기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망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망 D의 의사능력 결여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써 적법·유효하다.

나. 판단

피고의 위 주장은 ① 망 C의 유언 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는데, ② 피고가 망 D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.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, 2 및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, 을 제11호증의 1, 2,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 C의 유언이 민법상 녹음에 의한 증언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명확하지 않고, 위 각 서증은 친인척의 사후적 진술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유언 내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와 망 D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남진

별지